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관세청

2025년 하반기
달라지는 관세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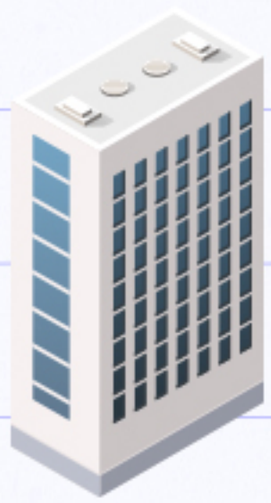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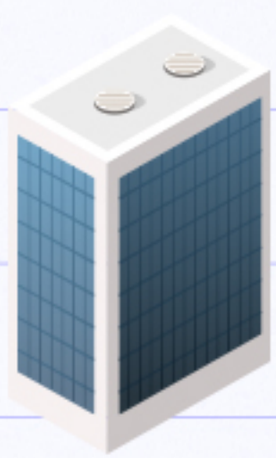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1 화장품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

종 전

□ **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***(326개)

* 국내에서 제조 ·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**C/O 발급** 신청 시 **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(8종 → 1종)**

달라지는 내용

□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* **확대**(343개)

○ **(신규 품목) 립스틱·아이섀도·마스카라 ·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** 포함 총 17개 품목 추가 지정

<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>

일반 수출 물품(8종)	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(1종)
○ 원산지소명서(1종) ○ 원산지소명서 입증 자료(7종)* * 재료명세서(BOM), 제조공정도, 원료구입명세서, 원료수불부, 원가산출내역서, 물품공급계약서, 원산지확인서 등 7종	국내제조(포괄)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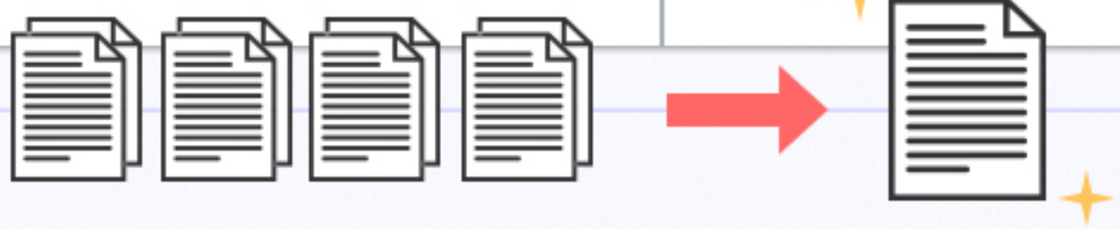

< 사 례 >

개정 전	· **태국으로 마스크 팩을 수출하는 S사**는 한-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**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 자료인 제조공정도, 재료명세서, 원료구입명세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**하여 **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**
개정 후	· 태국으로 마스크 팩을 수출하는 S사는 한-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**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 자료**(제조공정도, 재료명세서, 원료구입명세서 등) **총 8종의 서류 제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1종을 제출**하여 **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**

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 서류 제출 대폭 축소(8종→1종)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

시행일 '25. 6. 30. 시행(「FTA관세법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[별표2의2]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2 보세판매장 이용 면적 증감 시 심의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

종 전

□ 보세판매장 수용 능력 증감 신청에 대한 세관장 직권 승인 요건 (제14조 제3항 단서)

- 제4조의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
- 화물 반출입 관리 및 CCTV 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 단속상에 문제가 없을 것
- 매장 면적 확대(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의 110%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한다) 또는 매장 면적 축소

달라지는 내용

□ 세관장 직권 승인 대상 확대

- <현행과 같음>
- <현행과 같음>
- 매장면적 축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장 면적 확대

가. 최초 특허받은 **매장 면적의 110% 이내 로 확대**

나.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**50m² 이내로** 확대

기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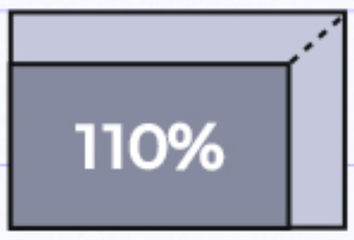

기존 허가 면적 110% 확대

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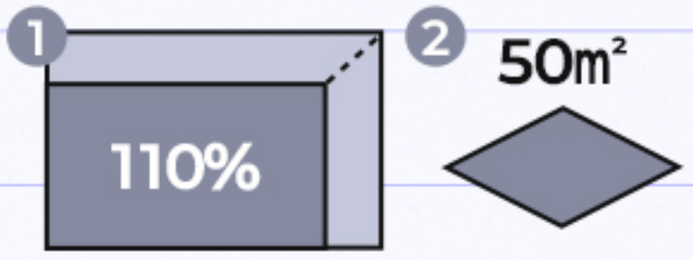

기존 허가 면적 110% 확대 + 50m² 확대

< 사 례 >

개정 전	• D 면세점은 매장 **면적 33m²로 면세점 특허를 받아 영업하던 중, 매장 면적 10m² 확대를 신청**하였고, **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관할 세관장의 승인**을 거쳐 매장 면적을 확대함
개정 후	• D 면세점은 매장 면적 33m²로 영업하던 중, 매장 면적의 10m² 확대를 신청하였고, **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**으로 매장 면적 확대가 가능해짐

기대효과 상대적으로 매장 규모가 작은 중소·중견 면세점의 소규모 면적 확장 신청에 대한 절차적 형평성 및 편의성 제고

시행일 '25. 9월 시행 예정(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4조 개정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3 우편물 목록통관 서식 및 제출 절차 마련·시행

종 전

□ 우편물 목록 제출 생략 가능

- 특송 통관목록 서식을 활용하여 일부 물품만 목록 제출

달라지는 내용

□ 우편물 목록 통관 서식 및 제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

- 통관우체국의 장은 접수하는 전체 우편물의 목록 제출

신 규

우편물 목록 통관 서식 마련

세제 혜택

< 사 례 >

개정 전	· **통관우체국**은 수출기업 S사가 관세청에 정보 제공을 동의한 **일부 수출 물품**에 대해서만 **특송물품** 통관 시 제출하는 통관 목록 서식을 활용하여 **우편물 목록 제출**
개정 후	· **통관우체국**은 수출기업 S사가 **우편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**에 대하여 우편물 목록 통관 서식으로 **목록 제출**

기대효과 우편물 목록 수출에 대해 적정 수출 관리 및 특송업체 목록통관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영세율·수출실적 수혜 제공 기반 마련

시행일 '25. 8. 29. 시행 (「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」 제58조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4 보세건설장 특허·관리 세관 유연화

종 전

□ 보세건설장 특허(제4조)

· <신설>

달라지는 내용

□ 보세건설장 특허 세관 유연화

· **보세건설장 완공 후** 기존 보세공장과 **단일 보세공장으로 통합**할 예정인 경우, 기존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의 특허 및 관리

< 사 례 >

개정 전	· A지역에 보세공장을 운영중인 S사는 B지역에 공장 증설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운영 중이며 증설공장 완공 후 A보세공장으로 통합관리할 예정이지만, 현재 **보세건설장의 특허·관리 및 수입통관은 B지역 관할세관에서 관리**하고 있어 A·B 지역 관할세관 구분 착오에 따른 **각종 신고 오류 및 건설 지연 발생**
개정 후	· **보세건설장 특허·운영 시점부터** 보세공장 특허·운영까지 전과정을 **기존 A지역 관할세관에서 관리**할 수 있게 되어 **각종 신고오류 방지 및 신속한 건설이 가능해짐**

기대효과 보세건설장과 단일 보세공장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, 신고 오류 방지, 공사 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

시행일 '25. 9월 시행 예정(「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 제3항 신설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5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

종 전

□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

• 납세의무자 성명 +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일치 시 통관 가능

달라지는 내용

□ 검증 체계 강화

•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 정보(성명+전화번호)와 신고서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+ 납세의무자 성명 + **전화번호**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관 가능

변 경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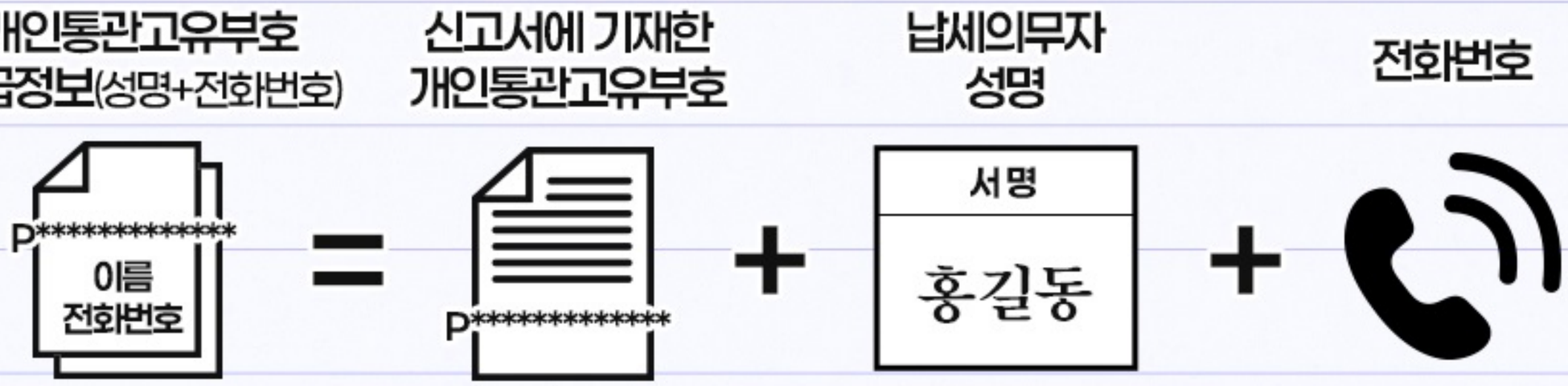

< 사 례 >

개정 전	• A는 **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**해 중국산 짝퉁 의류 등 138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판매
개정 후	• 목록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체계와 동일하게 일반수입 통관고유부호 검증 수준을 강화하여 **명의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차단**

기대효과 관세행정 본인 인증 서비스 관리 강화로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행위 예방

시행일 '25. 8. 8. 시행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확인 절차 개선

종 전

□ 현지 확인 **시작 전날까지** 신청인에게 현지 확인 통지서 송부

달라지는 내용

□ 현지 확인 **시작 5일 전까지** 신청인에게 현지 확인 통지서 송부

기존

변경

< 사 례 >

개정 전	· **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A사는 증명서 발급기관**으로부터 원산지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**현지 확인 통지**받은 날의 바로 **다음 날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지받음**
개정 후	·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A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**현지 확인 통지받은 날의 5일 후에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받음**

기대효과 현지 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

시행일 '25. 6. 30. 시행(「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29①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7 원산지 등 사전 심사 신청 서류 제출 절차 개선

종 전

□ 원산지 등 사전 심사 **신청 서류 제출 대상**

○ (원칙) 신청인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

<추 가>

달라지는 내용

□ 원산지 등 사전 심사 **신청 서류 제출 대상 확대**

](좌 동)

○ (예외) 영업기밀이 포함된 서류 등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·생산자가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

기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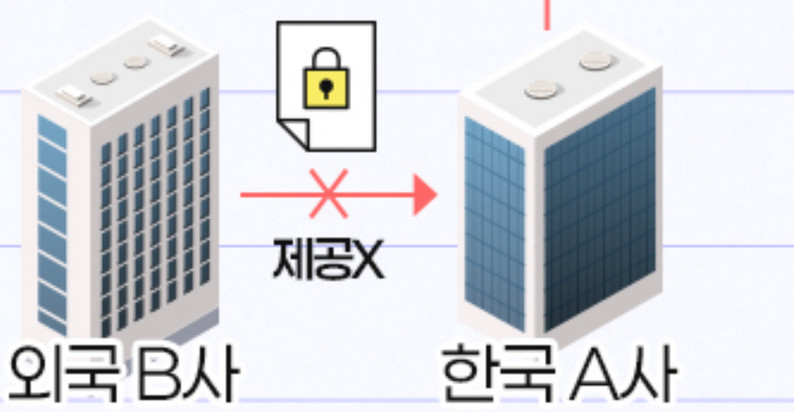

변경

< 사 례 >

개정 전	· **국내 수입사 A사는 스위스산 물품을 수입하기 전 FTA 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,** 스위스 **수출자 B사가 영업기밀을 이유**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원재료내역서, 제조공정도 등을 **제공해 주지 않아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함**
개정 후	· 국내 수입자 A사가 원산지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, 스위스 **수출자 B사가 영업기밀이 포함된 심사 서류를 관세청에 직접 제출**함으로써 **B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함과 동시**에 국내 수입자 **A사의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활용이 가능해짐**

기대효과 사전 심사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협정관세 적용을 지원

시행일 '25. 6. 30. 시행(「FTA 관세법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§47②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8 법규 준수도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등

종 전

ㅇ 법규 준수도 평가 기준 중 신고 정확도의 정정 항목(중요/경미)만 공개

ㅇ 관세청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 협력도 평가

ㅇ AEO 위주*의 관세 협력도 평가

* 예) AM협력도, AEO활용사례나눔대회

달라지는 내용

ㅇ 정정 항목 외에 **「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」, 「세부 평가 항목 및 정의」공개**

ㅇ 관세청 자체 전산 정보 외에 **「업체의 신청(Uni-pass)에 의한 관세 협력도 평가」 프로세스 도입**

ㅇ **AEO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 협력도(가점) 항목 신설***

* 간담회 · 설명회, 교육, 경진대회 등

평가 기준 확대

기존

AM협력도, AEO활용사례나눔대회

간담회 · 설명회, 교육, 경진대회 등

→ **+α 법규준수도 가점 반영**

< 사 례 >

개정 전	· **A사는 관세청 주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참여**하였음에도, **AEO가 아니므로 법규준수도에 가점 반영*되지 않음** * AEO는 간담회 참석 증빙을 AM(기업상담전문관)에게 제출하여 법규준수도에 가점 반영
개정 후	· A사는 관세청 **주관 간담회 참석 증빙자료를 Uni-pass로 제출**하여 **법규준수도에 가점으로 반영됨**

기대효과 법규 준수 평가제도의 투명 · 공정성을 제고하고, 관세 협력도 자율 신청 · 평가 항목 확대로 자율 법규 준수 견인

시행일 '25. 12. 20. 시행 예정(「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관세청

09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

종 전

□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(관세법 제27조 제2항)가 있으나, 제출에 관한 세부 지침 부재

- <신설>
- <신설>
- <신설>
- <신설>
- <신설>

달라지는 내용

□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**대상 기업**, 제출 **자료 종류**, **제출 방법**, **미제출** 시 **제재조치** 규정

※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

- **과세자료 제출 생략 대상 규정**
  - AEO(수입부분), ACVA(결정물품),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미만
- **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**
  -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최초 1회만 제출
- **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**
  - 8개 분야* 규정, 해당 없을 시 '미제출 사유서' 제출

  * 권리 사용료, 생산 지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- **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**
  - '지연 제출 사유서'를 제출하고, 30일 이내 제출
- **과세자료 미제출 기업 제재조치**
  - 월별 납부업체 승인 취소
  - 담보제공 생략 중지
  - 관세조사 또는 세액 심사 등

기대효과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기업, 제출 자료 종류, 제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정확도 제고

시행일 '25. 9. 1. 시행 (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4조 개정)